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0283호 일부개정 2007. 09. 20.)이 개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개정 된 상위법의 법조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에 관한 상위법 개정 조항을 반영함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60조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타

1)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하는 공사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12조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.	제12조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 -----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판단하는 공사
9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	10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